중 국

[판례 분석]
저작권 침해에 의한 부당이득 산정 및 법정배상 판단

2026. 11. 11.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저작권 침해에 이용된 상품의 판매실적이 확인되더라도 판매금액을 곧바로 침해자의 위법소득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침해된 저작물의 판매 기여도와 영업비용, 플랫폼 거래자료의 증명력 및 관련 재무자료의 사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위법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행위의 성격과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정배상을 적용할 수 있음.

1. 현황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권리자의 실제 손실이나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임. 특히 저작권 침해에 이용된 상품의 판매실적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판매금액 전체를 침해행위로 발생한 이익으로 볼 수는 없으며 침해된 저작물이 상품 판매에 기여한 정도와 관련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위법소득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과 비용자료뿐 아니라 산업 통계나 다른 기업의 재무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자료의 증명력과 해당 사건의 영업상황에 대한 관련성을 검토해야 함. 특히 위법소득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배상의 적용 여부와 배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요소가 문제됨. 본문에서는 기존 사진을 조합·편집하여 제작한 상품소개 이미지의 무단 이용으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분쟁사례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독창성 판단과 상품 판매실적·위법소득의 구별, 관련 증거의 평가 및 법정배상 적용에 관한 중국 법원의 판단기준과 적용방법을 살펴봄.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5)闽0982民初5576号
	2심	(2026)闽09民终837号

관할 법원	1심	푸젠성 푸딩시 인민법원(福建省福鼎市人民法院)		
	2심	푸젠성 닝더시 중급인민법원(福建省宁德市中级人民法院)		
당사자	A 업체		1심: 원고	2심: 항소인
	B 찻집		1심: 피고	2심: 항소인
핵심 쟁점	1심	1. A 업체가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는 이미지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저작권 귀속 2. B 찻집의 저작권 침해 여부 3. B 찻집의 법적 책임		
	2심	1. A 업체가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는 이미지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A 업체가 주장하는 배상금액이 적절한지 여부 3. B 찻집이 증거를 위조하였는지 여부		
판결 결과	1심	1. A 업체는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는 이미지가 저작물에 해당하며 A 업체는 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함. 2. B 찻집은 A 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함. 3. B 찻집은 A 업체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1,800위안을 배상해야 함.		
	2심	상소기각, 원심유지		
관계 법령	・저작권법(著作权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0조 제(1)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25조 제(2)항			
최종 판결일	2026년 8월 12일			

(1) 사건 개요

A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차(茶)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운영자가 직접 촬영한 차병(茶饼) 사진 3장에 다른 사진과 문구를 결합하여 상품소개 이미지 4장을 제작하고, 제3자로부터 취득한 찻잔 사진에 다른 이미지와 문구를 결합하여 추가로 상품소개 이미지 4장을 제작함. A 업체는 이렇게 제작한 총 8장의 이미지(이하 "사건 이미지"라 함)를 2024년 10월 29일 X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자사 온라인 점포에 게시하여 차 제품을 홍보함.

한편 B 찻집은 X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차 제품(이하 "분쟁 상품"이라 함)을 판매하면서 자사 온라인 점포의 상품소개 페이지에 사건 이미지 8장을 사용함.

A 업체는 B 찻집이 허락 없이 사건 이미지를 상품소개에 사용한 행위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B 찻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2) 핵심 쟁점

① 원고의 주장

A 업체는 사건 이미지가 사진·문구 등의 선택과 조합·편집을 통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며, B 찻집이 허락 없이 이를 온라인 상품소개에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A 업체는 산업 평균 이익률과 상품 판매금액 등을 근거로 1심 법원이 인정한 플랫폼 기술서비스비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의 배상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함.

② 피고의 주장

B 찻집은 사건 이미지 가운데 차병 사진은 기존에 공개된 사진들과 구도·조명·촬영 각도 등이 유사한 기계적 촬영물이고, 찻잔에 차를 따르는 사진은 제조업체가 제공한 것으로 A 업체가 추가한 문구에도 독창성이 없다고 주장함. 또한 A 업체가 원본 저장매체나 저작권 양도계약서 등 충분한 권리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저작물성과 권리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함. 또한 B 찻집은 사건 이미지의 시장가치가 낮고 상품 판매를 통한 실제 이익이 미미하므로 1심의 배상금액도 과다하다고 주장함.

③ 핵심 쟁점

상기한 양 당사자의 주장과 항변을 종합하면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음.

a. 사건 이미지가 저작물에 해당하며 A 업체가 사건 이미지의 저작권을 보유하는지 여부
b.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및 1심 법원이 정한 배상금액의 적절성 여부

(3) 법원의 판단

1) 사건 이미지의 저작물 성립 및 권리 귀속

[요약] 사건 이미지는 사진·문구 등의 선택과 조합·편집을 통해 최소한의 창조성을 갖춘 저작물에 해당함. 또한 이미지의 제작·게시 관련 증거를 통하여 A 업체가 사건 이미지의 저작권자로 인정됨. 따라서 B 찻집은 A 업체의 복제권 및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음.

① 저작물 성립 여부

중국 <저작권법> 제3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문학·예술·과학 영역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지적 성과임. 특히 독창성은 저작물 성립의 핵심 요건으로서 창작자의 독립적인 창작 의사가 반영되고 소재의 선택, 취사, 배열, 가공 등에서 일정한 개성적 표현이 나타나야 하지만 최소한의 창조성이 인정되면 충분함.

본 안건에서 사건 이미지 8장이 차병(茶瓶) 사진의 촬영, 찻잔 사진의 선택, 문구의 추가 및 조합·편집을 통하여 제작되었고 그 과정에 창작자의 개성적인 심미적 선택과 지적 노력이 반영되어 최소한의 창조성을 갖추었으므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됨. 또한 제조업체가 제공한 찻잔 사진에 대해서도 A 업체가 원본 이미지의 내용을 수정·편집하고 문구를 추가하여 새로운 독창적 표현을 형성하였으므로 그 조합·편집을 통해 형성된 전체적 표현에 저작권이 인정됨.

② 권리 귀속

권리 귀속에 관해서는 저작권이 창작 완료와 동시에 발생하고 저작물 등록증이 저작권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권리 취득의 전제조건도 아님. 나아가 A 업체가 휴대전화 화면녹화 자료와 X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점포의 게시기록 등을 통하여 사건 이미지의 저작권자임을 증명함으로써 초보적인 입증책임을 이행하였다고 인정됨. 따라서 A 업체는 사건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

③ 저작권 침해 여부

A 업체가 사건 이미지를 온라인 점포에 공개하였으므로 B 찻집은 이에 접할 수 있었음. 따라서 B 찻집이 허락 없이 사건 이미지를 자사 상품소개에 사용하여 공중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복제권 및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가 성립함.

2)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및 배상금액의 적절성

[요약] 사건 이미지의 상품 판매에 대한 기여도와 B 찻집의 영업비용 등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정배상의 적용이 적절함. 1심 법원이 침해행위의 기간·방식, 상품 판매상황 및 이미지의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정한 배상금액 1,800위안도 부당하지 않음.

중국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권리자의 실제 손실 또는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 사용료를 참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른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500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법정배상을 명할 수 있음.

1심 법원은 A 업체가 침해행위로 인한 실제 손실이나 B 찻집의 위법소득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사건 이미지의 독창성 정도와 수량, 이미지의 이용방식, 침해행위의 지속기간, 침해 관련 상품의 판매상황, 상품 판매에서 사건 이미지가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1,800위안으로 정하였음.

이와 같은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본 안건은 A 업체가 실제 손실이나 권리 사용료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B 찻집의 위법소득 역시 사건 이미지가 상품 판매에 기여한 비율을 수량화하기 어렵고 영업비용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법정배상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됨.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함.

① 플랫폼 기술 서비스비에 관한 증거평가

X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확인된 분쟁 상품 판매 링크의 거래건수는 1,073건, 판매금액은 52,281.94위안이며 1심 법원이 인정한 해당 거래의 기술 서비스비는 19,641위안임.

A 업체는 X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기본 기술 서비스 비율인 0.6%를 적용해야 하므로 1심 법원이 인정한 기술 서비스비가 과다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A 업체가 제출한 플랫폼 요금 규정에 기본 기술 서비스비 외에도 상품 분류별 기술 서비스비, 보조금 행사 관련 기술 서비스비, 라이브 방송 관련 기술 서비스비 등 여러 유형의 비용이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함. 이에 따라 기본 요율 0.6%만으로 전체 기술 서비스비를 계산해야 한다는 A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또한 1심 법원이 인정한 기술 서비스비는 법원이 X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확보한 공식 관리시스템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높은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단함. A 업체가 제출한 요금 규정만으로는 해당 자료의 증명력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므로 1심의 관련 사실인정을 유지함.

② 산업 평균 이익률 및 다른 기업의 재무자료에 관한 증거평가

A 업체는 침해자의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국가 통계자료에 나타난 정제차 관련 산업의 평균 이익률과 다른 차 기업들의 재무자료를 제출함. 그러나 A 업체가 제출한 국가 통계자료가 주류, 음료, 정제차 제조업에 속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인 반면 B 찻집은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통계자료의 대상과 B 찻집의 실제 영업형태가 일치하지 않음. 따라서 해당 자료는 본건과 관련성이 없어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산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A 업체가 제출한 다른 차 기업들의 연간 재무자료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들은 상장된 정제차 기업인 반면 B 찻집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차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 규모, 영업방식, 이익의 발생구조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두 기업의 재무자료 역시 본건과 관련성이 없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음.

③ 1심 배상금액의 유지

본 안건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술 서비스비에 관한 다툼이 실질적으로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산정할 때 공제할 비용 항목에 관한 이견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A 업체의 주장에 따라 0.6%의 기술 서비스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사건 이미지를 이용함으로써 B 찻집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법정배상을 적용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1심이 사건 이미지의 독창성 정도, 침해행위의 성격과 지속기간, 침해 관련 상품의 판매상황, 사건 이미지의 판매 기여도 및 A 업체의 증거확보, 권리구제 방식 등을 종합하여 배상금액을 1,800위안으로 정한 것은 법정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명백히 부당하지 않으므로 1심의 배상금액을 유지함.

3. 판례분석

1) 기존 소재의 조합·편집에 따른 전체 표현의 독창성 판단

① 판단기준

본문 판례에서 2심 법원은 저작물의 독창성을 판단할 때 창작자의 독립적인 창작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소재의 선택, 취사, 배열, 가공 등에서 개성적인 표현이 나타나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최소한의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물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

이러한 기준은 기존에 존재하는 소재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독창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재를 선택하고 조합·편집하는 과정에서 창작자의 개성적인 표현이 형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특히 개별 소재의 독창성과 여러 소재가 결합하여 형성된 전체적인 표현의 독창성은 구별되는 문제이므로 기존 소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결과물도 그 선택, 배열, 가공에 창작자의 개성적인 표현이 나타난다면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음.

② 판단방법

법원은 사건 이미지의 독창성을 판단하면서 개별 소재의 출처와 창작 방식에 관한 B 찻집의 항변을 검토하고 각 항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항을 중요하게 평가함. 우선 A 업체가 직접 촬영한 차병 사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개된 사진과 유사하다는 B 찻집의 주장에 대하여 완전한 동일성이나 실질적 유사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반면 제조업체가 제공한 찻잔 사진에 대해서는 기존 사진을 수정·편집하고 문구를 추가하여 새로운 독창적 표현을 형성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함.

이러한 판단에서 차병 사진에 관해서는 선행 사진과의 동일성·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증거의 충분성이 중요하게 작용한 반면 찻잔 사진에 관해서는 기존 소재에 가해진 수정·편집과 문구 추가를 통하여 형성된 새로운 표현의 독창성이 중요하게 작용함. 법원은 이를 검토하면서 사건 이미지의 소재 선택과 조합·편집에 창작자의 개성적인 심미적 선택과 지적 노력이 반영되어 최소한의 창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③ 법적 중요성

사건 이미지의 독창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기존 사진과 문구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상품소개 이미지의 경우 개별 소재의 독창성과 그 소재들을 조합·편집하여 형성한 전체적인 표현의 독창성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특히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상업적 이미지라도 소재의 선택, 배열, 가공 과정에서 창작자의 개성적인 표현이 형성되었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본문 판례는 기존 소재의 이용 여부와 최종 결과물의 독창성 사이에 직접적인 동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줌. 즉 기존 소재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니더라도 그 소재들이 결합하여 형성한 전체적인 표현에는 독창성이 존재할 수 있음. 다만 여러 소재를 조합·편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독창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단순한 기계적 결합을 넘

어 창작자의 개성적인 표현이 실제로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함.

2) 분쟁 상품의 판매실적과 위법소득의 구별 및 법정배상의 증거평가

① 판단기준

중국 <저작권법> 제54조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권리자의 실제 손실 또는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 사용료를 참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배상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본문 판례에서 2심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실, 침해자의 위법소득, 권리 사용료, 법정배상의 순서로 검토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특히 법원의 판단구조에 따르면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침해 관련 상품의 판매실적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이익을 확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함. 또한 법원은 위법소득 등을 산정하기 어려워 법정배상을 적용하는 경우 저작물의 독창성 정도, 침해행위의 성격과 지속기간, 상품 판매상황, 침해된 이미지의 판매 기여도 및 권리구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함.

② 판단방법

법원은 침해 관련 상품의 판매금액과 기술 서비스비를 확인하면서 플랫폼의 실제 거래자료와 A 업체가 제출한 일반적인 요금규정의 증명력을 구분하여 평가함. 특히 1심 법원이 X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확보한 자료는 실제 거래 내역과 기술 서비스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반면 A 업체가 제출한 요금규정은 기본 기술 서비스비 외에도 다양한 비용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기본 요율인 0.6%만으로 전체 기술 서비스비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법원은 공식 거래자료의 증명력을 부정할 충분한 반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1심의 기술서비스비 인정을 유지함.

반면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산업 통계자료와 다른 기업들의 재무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가 B 찻집의 실제 영업상황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함. 법원은 국가 통계자료의 조사대상과 B 찻집의 사업자 유형이 다르고 다른 차 기업들과도 사업 규모, 영업방식, 이익구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자료들을 위법소득 산정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음.

특히 법원은 A 업체의 주장에 따라 기술 서비스비를 0.6%의 요율로 계산하더라도 사건 이미지가 상품 판매에 기여한 정도를 수량화하기 어렵고 영업비용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어 구체적인 침해이익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이는 개별 비용 항목의 산정에 관한 다툼과 침해자의 위법소득 전체를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결국 법원은 A 업체가 실제 손실이나 권리 사용료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침해자의 위법소득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정배상의 적용을 인정함. 이에 따라 침해 관련 상품의 판매상황과 사건 이미지의 판매 기여도, 침해행위의 성격과 지속기간 및 권리구제 비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1심이 정한 배상금액 1,800위안을 유지함.

③ 법적 중요성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저작권 침해에 이용된 상품의 판매실적을 확인하는 것과 해당 침해행위로 발생한 위법소득을 확정하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임을 보여줌. 특히 판매실적과 일부 비용이 확인되더라도 침해된 이미지의 판매 기여도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법소득을 확정하지 못할 수 있음. 이때 확인된 판매실적은 위법소득을 직접 산출하는 근거로 충분하지 않더라도 법정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본문 판례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증거를 평가할 때 자료 자체의 신뢰성뿐 아니라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영업 상황과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줌. 법원은 X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확보한 거래자료의 높은 증명력을 인정하면서도 산업 통계자료와 다른 기업들의 재무자료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 영업방식, 이익구조 등의 차이를 근거로 관련성을 부정함. 그 외에도 법원은 개별 비용 항목의 계산 결과가 달라지더라도 구체적인 침해이익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유지된다면 법정배상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4. 시사점

본문 판례는 기존 사진·문구 등을 조합·편집한 전체 표현의 독창성을 기준으로 저작물성을 판단하고, 침해 관련 상품의 판매실적과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구별하여 이미지의 판매 기여도와 영업비용의 산정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거래자료의 증명력과 비교자료의 관련성을 평가하여 법정배상을 적용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 참고자료

판례
(2026)闽09民终837号